

운전분야 테러대비 예방대책

□ 승무원 조치사항

- 기지, 주박열차
 - 열차기동 후 차량내·외부 점검(차량하부, 객실선반, 분전함쇄정상태 등)
- 운행열차
 - 전도주시철저로 선로 및 각종 시설물 이상유무 확인
 - 운전실 통로문쇄정철저 및 외부인 승차금지
 - 승객이 테러의심 신고하는 경우 관제보고 후 지시에 따라 조치
 - 역간 운행 중 테러상황 발생시 가능한 최구정기(정기)에 응
 - 역간 이상 정차시 관제에 열차방호요청 및 최구 조치(승객유도, 안내방송 등)
 - 열차내 테러경보 상황 홍보방안 실시(열차당 2회)

고객여러분께 안내 말씀 드립니다.
 최근 국내외 테러의 범이 급증함에 따라 우리나라 국가테러 경보가 “주의” 단계로 계속 시행 중에 있습니다.
 역사나 열차 내에서 인화물질이나 폭발물 등을 발견하거나 방화 등 안전을 위해하는 위를 특 긴급 경우 역 직원이나 승무원, 112 등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회차역 운전실 교환시
 - 객실내 이상 물체(가방 등) 발견시 관제보고 후 지시에 따라 조치
 - 회차역 도착시 잔류승객 없도록 하차조치(거동수상자 발견시 관제보고)

□ 승무원 교육사항

- 비상대응 현장조치 매뉴얼
 - 열차 폭발물 테러
 - 열차 독가스 테러 등